경제민주주의21
Economic Democracy 21
❑ 대표 | 김경율
❑ 문의 | 010-3060-1917 | econdemos21@protonmail.com
❑ https://econdemos21.com | blog.naver.com/econdemos21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경제부 · 사회부
발	신	경제민주주의21
일	시	2020. 09. 11. (총 27쪽)
문	의	전화	010-3060-1917 이메일	econdemos21@protonmail.com
제	목	[보도자료]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 추 장관에 대한 이번 고발은 경제민주주의21 창립 이후 제1호 고발
❍ 추 장관의 검찰청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반 행위는 직권남용
❍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 통한 소명 기회 부여에도 설득력 있는 회신 못해
❍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 ·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고발

1.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9/11)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찰청 상급자, 검찰총장 및 법무부 감찰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행위들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검찰의 자율성 · 중립성 보장**을 위해 본 단체 창립 이후 **제1호 고발**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3. 추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먼저 추 장관은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함으로써(검찰청법 제8조 위반) 그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고(검찰청법 제7조 위반),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검찰총장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4. 추 장관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 과정에서도 그 직권을 남용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로 한 검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하

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한 검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질의한 경제민주주의21의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서에 대해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 따라서 추 장관은 한 검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5. 추 장관은 또한 **한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외양을 만들고자 2020.6.25.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발표한 후 2020.7.3. 법무부 감찰관을 임명하여 감찰에 나서게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전보조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있는 처분이었으며, 감찰관을 임명한 2020.7.3.은 앞에서 언급한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서신을 발송한 다음날이었다. 즉 추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에 감찰관을 임명하여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고, 감찰관은 위의 하자있는 전보조치가 없었더라면 법무부의 직접감찰 대상이 아니었을 한 검사를 감찰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6.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만약 본 사건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본 사건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끝.

붙임 1: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김경율

피고발인　　추미애

2020. 9. 11.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종 휘, 김 태 환

(T. 02-6310-6633, F. 02-6310-6634,
jhkim@mastlaw.co.kr)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김경율

서울 마포구

전화: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종휘, 김태환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30, 1004호(성수동1가, 서울숲IT캐슬)

전화: 02-6310-6633, 팩스: 02-6310-6634

이메일: jhkim@mastlaw.co.kr

피고발인 추미애

고발죄명 직권남용

고 발 취 지

고발인 김경율(이하 '고발인'이라고 합니다)은 피고발인 추미애(이하 '피고발인'이라고 합니다)를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준엄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발인은 작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사회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입니다.

피고발인은 2020. 1. 2.부터 현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MBC 뉴스데스크는 2020. 3. 31. 한 제보를 토대로 고발 외 한동훈 전 검사장과 고발 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언론기관의 후속보도와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고발 외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 4. 9. 위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후, 2020. 4. 17. 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0. 4. 29.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2020. 6. 25. 피고발인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는 한동훈에 대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여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다음 날인 2020. 6. 26. 한동훈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발인은 2020. 7. 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지휘를 하였습니다.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이에 따라 피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직권남용 관련법리

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나.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마.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4. 고발사항 (1) – 수사지휘관련 직권남용

가. 관련규정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검찰청법 제7조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각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급자인 검사가 하급자인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청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한편,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전체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20. 7. 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래와 같은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증 제1호증**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서).

<그림 1> 증 제1호증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서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위 수사지휘는 그 제목이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만을 할 수 있는데, 위 수사지휘는 외양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그 실질은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하여 위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7조를 위반하여 검찰청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방해하는 수사지휘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수사지휘의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한 밖의 것이기도 하는 바, 이는 명백히 피고발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1) 대검찰청 상급자에 대한 직권남용

① 일반적인 직무권한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검찰청법 제8조**).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외견상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합니다.

② 직권의 남용

위 수사지휘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위 수사지휘는 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을 것**과 ② **대검찰청 등 상급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하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 수사지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에 대한 지휘·감독**입니다. 만약 위 수사지휘를 단순히 외양만 보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에 해당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게 되면, 향후 법무부장관은 수신을 검찰총장으로 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한 지휘를 내릴 것'이라는 따위의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청법은 제7조에서 명백히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데, 위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이 법무부장관의 지위에서 내린 위 수사지휘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③ 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상급자인 대검찰청 등은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사팀을 지휘·감독할 법률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위 수사지휘를 통해 상급자의 지휘·감독 권한 자체를 박탈하였는 바, 이는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2020. 7. 2.자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검찰총장 외의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이며, 검찰청법 제7조를 위반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위 수사지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는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상술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청법 제7조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바,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지시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2020. 6. 4.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위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보고할 필요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 일선 상급자들에게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총장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 소결

이상의 이유와 같이 피고발인의 2020. 7. 2.자 수사지휘는 어느 모로 보나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권리남용임이 명백합니다.

5. 고발사항 (2) – 인사조치관련 직권남용

가. 관련규정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피고발인은 2020. 6. 26.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은 2020. 7. 3. 및 2020. 8. 20.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게 위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고발인은 위 질의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법무부 질의답변서).

법무부가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면서도 두 차례나 위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발인은 위 인사조

치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검사의 보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 바, 피고발인의 위 인사조치는 권리남용임이 명백합니다.

다. 구체적 검토

1) 일반적인 직무권한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합니다.

2) 직권의 남용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의 문언을 필요적 절차가 아닌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개진 권리

는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에 의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검찰청법 입법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림 2> 2003. 12. 26. 개최된 법사위 회의록 중 법사위 함승희 의원(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의 수정대안 소개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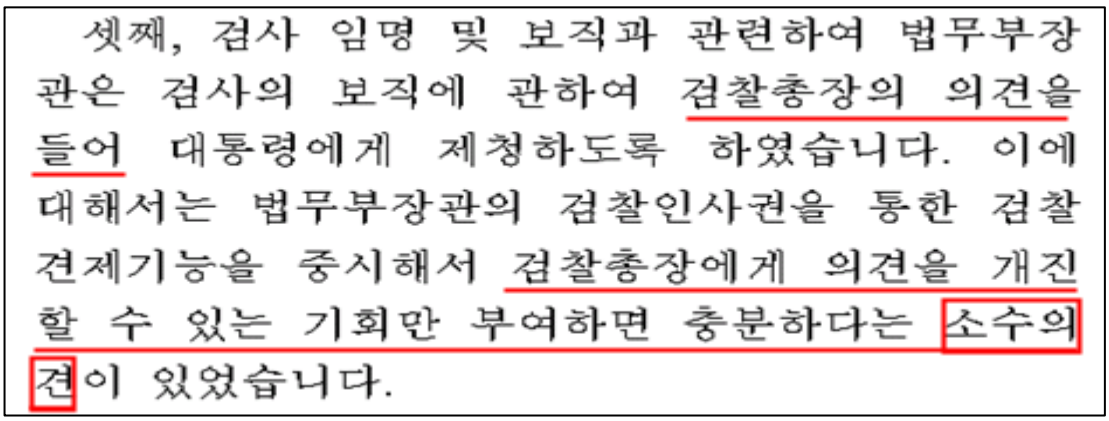

셋째, 검사 임명 및 보직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권을 통한 검찰견제기능을 중시해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식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는 결국 검찰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규정이 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발인이 위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

항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이 법무부장관의 지위에서 내린 위 인사조치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권리행사방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검사 보직 제청 전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법률상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위 인사조치가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의견도 수렴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발인은 검찰총장의 의견개진 권한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서 검찰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의 2020. 6. 26.자 인사조치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검찰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6. 고발사항 (3) – 감찰관련 직권남용

가. 관련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감찰관)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검찰의 자율성 보장) ①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② 법무부는 제1항에 따른 검찰의 자체 비위조사와 감사 후에 필요한 경우 비위조사와 감사를 수행한다.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에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 소추 ·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찰을 명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피고발인이 2020. 6. 25.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발표하고 2020. 7. 3. 감찰관 임명을 통해 한동훈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한 것임이 명백**한 바, 이는 법무부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상술하면,

첫째, 피고발인은 검언유착 사건이 수사중에 있고, 이에 따라 감찰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2020. 6.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당시 고발 외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2020. 6. 18.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참고자료1**. 2020. 6. 18. 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한동훈 맞나' 질문에 "부인 어려워"_미디어오늘).

박범계 위원 :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가지고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했고 인권부에 또 감찰 기능적 조사를 하는데 이 중복되는 문제는 아까 감찰 기능의 형해화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피고발인 : 일단은 대체로 감찰에서 직무감찰 도중에 여러 비위나 법령 위반이 있다면 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로 넘기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서 또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즉, 피고발인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찰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직접 감찰을 해야하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직접 감찰을 명한 것입니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검찰총장의 의견개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통해 2020. 6. 26. 한동훈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감찰을 명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하자 있는 전보조치를 통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동훈에 대한 감찰이 적법하다는 외양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피고발인은 2020. 7. 2.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내린 이후에도 다음 날 감찰관 임명 등을 적시하여 한동훈에 대한 감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발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은 위 감찰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무부에 공개질의를 하였지만, 법무부는 2020. 8. 27.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 제15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찰이 착수되었고, 감찰사건에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답변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법무부 질의답변서).

<그림 3> 증 제3호증 법무부 질의답변서 중 법무부 2차 답변

1. 김경율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008-07 30377) 중 감찰담당관실 소관인 질의1-1 및 1-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감찰을 지시한 것은 동 감찰규정 제15조 제1항 위반여부와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감찰규정 제5조의2, 제15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찰이 착수되었고, 감찰사건에 있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정찬철(02-2110-30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피고발인이 감찰을 명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며, ② 피고발인이 검언유착 사건이 수사중이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위법한 전보조치로써,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동훈에 대한 감찰이 적법하다는 외양을 만들어 부당하게** 법무부 소속 감찰관에게 한동훈에 대한 직접 감찰을 명하였으며, ③ 이는 위 법무부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7. 결어

이상의 이유와 같이 피고발인은 검찰청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무시한 채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남용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 감찰지시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까지 행사하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피고발인의 위 각 행위는 각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흔히들 검찰을 권력이 쥐고 있는 칼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검찰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표적수사', '기획수사'라는 수식어가 붙고는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실속에서도 개별 검사들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법무부장관인 피고발인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이대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며,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어 검찰은 더더욱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본 사건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규정지음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바,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증 제1호증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서
증 제2호증	법무부 질의답변서
증 제3호증	2020. 6. 18.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고발대리위임장 1통

2020. 9. 11.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종 휘

변호사 김 태 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